

-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-

심사보고서

○ 일 시 : 2023. 12. 22.(금) 15:00

○ 장 소 : 본회의장

○ 안 건

- 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
- 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

의회운영위원회

(위원장 유재호)

화성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23. 12. 06.
- 나. 발 의 자 : 유재호 의원 등 7인
- 다. 회부일자 : 2023. 12. 06.
- 라. 상정일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3년 12월 19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유재호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화성시의회 의원이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.

나. 주요골자

- 지원받을 수 있는 의정활동 범위에 대해 정함.(안 제2조)
- 소송비용 지원 절차에 대해 정의함.(안 제3조)
-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의 근거를 마련함.(안 제4조)
- 소송비용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10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조례안은 화성시의회 의원이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의원이 본연의 업무인 의정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보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등 관련 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됨.

다만, 본 의안 중 「별표1」 1. 소송비용의 지급기준 형사사건 내용부분에서 3. ‘시차원’을 ‘의회차원’으로 자구정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수 정 안 요 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 의견 요 지 : 없 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

화성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: 2023. 12. 06.
- 나. 발 의 자 : 김미영 의원 등 7인
- 다. 회부일자 : 2023. 12. 06.
- 라. 상정일자 : 제227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
(2023년 12월 19일 상정, 원안가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 (김미영 의원)

- 가. 제안이유
 - 「지방공무원 복무규정」이 2023년 6월 13일 개정됨에 따라 시간외 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해서 사용할 수 있게 조례를 최신화하는 사항임.
- 나. 주요골자
 -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범위에서 그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함.(안 제11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본 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 규정에 따라 민원편의 등 공무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시간외근무 및 공휴일 근무를 한 공무원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의 지급 대신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일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 관련 규정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고 관련 조례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-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 략
- 5. 토 론 요 지 : 생 략
- 6. 수 정 안 요 지 : 없 음
- 7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- 8. 소수 의견 요 지 : 없 음
- 9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 음